

간호대학 인사관계 내규

제정	1992.	7.	7.
개정	1997.	3.	28.
	1998.	12.	1.
	2002.	1.	24.
	2003.	4.	7.
	2004.	3.	29.
	2005.	4.	12.
	2005.	8.	29.
	2006.	7.	20.
	2008.	4.	15.
	2009.	9.	17.
	2010.	9.	28.
	2011.	3.	3.
	2014.	3.	6.
	2014.	10.	2.
	2015.	9.	3.

1. 전임교원 신규 임용

간호대학의 전임교원 신규 임용 후보자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에 필요한 각 항의 필수요건 외에 교수로서의 자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참고로 한다.

가. 자격기준

-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서 서울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2)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의한 다음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에 출판이 확정된 단독 연구논문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책임저자(교신저자) 논문 2편 이상(이중 SCI/SSCI 1편이상)을 포함하여 200점 이상 연구실적물

나. 신규 임용 후보자 자격심의 요목

- 1) 학부과정 평점과 순위
- 2) 연구실적물 평가 : 본부 규정과 간호대학 규정에 의한다.
- 3) 교육 연구 경력 : 교육 연구 경력 환산(%)
 - * 서울대학교의 임용기준의 소요 년수가 충족되더라도 박사학위 등 특별한 경력이 없고 고등학교 교원, 대학조교 연구경력 등의 경력만으로는 임용될 수 없음.
- 4) 임상경력 : 본교 및 타교의 간호학 전공자는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5.9.3. 개정)
- 5) 공개발표회 : 간호대학 전체 교수의 참석 하에 영어로 1회의 공개발표회를 갖는다.
참석 교수는 아래의 심의사항에 의거하여 평가한다.(각 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줌)
(2009.9.17 개정)

가) 학문적 신념

나) 연구 능력

다) 학문에의 기여도

라) 발표력(어휘구사 및 의사전달 능력)

마) 학자적 발전 가능성

- 6) 임용적합성 평가 : 2명의 추천서(단, 본교 출신의 경우 본 대학 교수 추천서는 제외한다)를 참고하여 전공영역 주임교수와 인사위원의 참석 하에 면접으로 실시한다. 단, 전공영역 주임교수는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가) 전공분야 교육경력

나) 전공분야 실무경력

다) 리더쉽

라) 교수로서의 품위 및 윤리의식

마) 학업성실성(대학, 대학원성적)

다. 심사단계

- 1) 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1단계), 면접심사(2단계) 두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하며 기초 및 전공심사 45%(연구실적 30%, 총괄연구업적 15%), 면접심사 55%(공개발표 25%, 교육 및 연구계획 20%, 임용적합성 10%)로 평가한다.
- 2) 연구실적물 심사와 총괄연구업적심사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단계 평가 점수로 하되, 전공부분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또는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평가에서 각각 부적격 처리된 경우 그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라. 표 결

- 1) 총평점 80점이상인자로 한다.
- 2)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근거한다.
- 3) 3차에 걸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임용 후보 결정을 유보한다.

마. 직명별 최저경력 년수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 본부 규정에 의한다.

- 1) 조 교 수 : 5년 이상
- 2) 부 교 수 : 9년 이상
- 3) 교 수 : 14년 이상

바. 연구실적 심사기준

1)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가) 전공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 출판된 학술저서 (단독저자로 출판된 것)
- . 국내외 공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온라인 게재 포함)(2014.10.2.개정)
- . 박사학위 취득 논문

나)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인정 기한 등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심사가 끝난 최종본 상태에서 출판예정일이 결정된 논문만을 접수하며, 게재예정 증명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발간 즉시 제출하되, 임용서류 제출마감일 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추가·삭제·수정 불인정)

2) 연구실적물의 인정비율

가) 연구실적물의 인정비율(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70점으로 한다.

- 단독연구 또는 편찬 : 100점
-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점
- 3인 이상 공동연구 : 50점
- 4인 이상 공동연구 : 30점

3) 연구실적물 등의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학부(과)장으로부터 많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전공분야의 위원 5명을 대학(원)장이 지명하여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위 이상으로 위촉하고 그 중 2인 이상은 타교 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4) 연구실적물 평가

가)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의 전공부분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은 제출된 연구실적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심사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사위원별 평균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인의 평균이 2.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 미만일 때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나) 연구실적물에 대한 내용평가는 심사위원 5인이 각자 그 내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중 최고 및 최저등급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그 실적물의 내용평가 점수로 하며 4.0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4.0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5) 연구실적물의 요건

가) 지원 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200점 이상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평가한 후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실적물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가 높은 것부터 최종 내용평가에 반영한다.

사. 총괄연구업적 심사

총괄연구업적에 대한 심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별첨 1] 서식의 각 항목을 6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아. 면접심사

- 1) 면접심사대상자 선정은 1단계 평가결과에 의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의 심사 대상자를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2) 공개발표는 간호대학 전체 교수가 심사위원으로서 2/3 이상이 참석하여 [별첨 2] 서식의 각 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최고 및 최저점수의 평가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 (2009.9.17 개정)
- 3) 교육 및 연구계획평가, 임용적합성에 대한 심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별첨 3], [별첨 4] 서식의 각 항목을 4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2009.9.17 개정)

2. 재계약임용

가. 심사기준

재계약 심사는 별첨 재계약임용 심사평정 총괄표 및 영역별 평가표와 같이 정하여 평가한다. 이 때 그 평가 결과는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구실적물 심사

- 1) 계약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교신저자) 논문을 1편 이상 포함하여 100점 이상, 2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에는 2편 이상 포함하여 300점 이상, 4년 초과 6년 이내인 경우에는 3편 이상 포함하여 400점 이상으로 한다. 단,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로 한다.(2008.4.15. 개정)
- 2)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인정비율
교수 신규임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014.10.2.개정)

3. 교원승진

가. 심사기준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첨 승진임용 심사평정 총괄표 및 영역별 평가표와 같이 정하여 평가한다. 이때 그 평가 결과는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구실적물 심사

- 1) 승진임용 연구실적물 심사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본교 이외의 학외 인사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사평정은 3인의 평균값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재임용연구실적물 심사기준에 따른다.
- 2)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인정비율
교수 신규임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승진에 따른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및 편수
계약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학진등재학술지 혹은 등재후보학술지,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 논문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교신저자) 논문을, 1편이상 (이 중 SCI/SSCI 1편 포함)포함하여 200점 이상, 2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에는 3편 이상 (이 중 SCI/SSCI 2편 포함)포함하여 400점 이상, 4년 초과 6년 이내인 경우에는 5편이상 (이 중 SCI/SSCI 3편 포함)포함하여 500점 이상으로 한다. 단,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로 한다(2008.4.15 개정)
- 4) 타교경력인정 승진대상자 및 재계약임용한 전임교수는 서울대학교전임교수승진에 관한 임용시행세칙 제3조를 따른다.

4. 교원의 정년보장 임용

가. 심사기준

- 1) 교수의 정년보장은 교수 업적 평가에서 80점 이상, 연구활동점수에서 35점 이상 획득 하여야 하며, 부교수의 정년보장은 연구활동점수가 38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2) 대학장은 후보자 전공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계 최상급 전문가 3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한다.

나. 연구실적물 심사

- 1) 정년보장 임용을 위한 심사의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승진임용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 2) 총괄연구실적은 후보자가 본교 임용 이후 출판한 연구논문, 저서, 학술활동(학술회의, 초청강연 등)이 포함되고, 학과장·대학(원)장과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각각 평가한다.

다. 정년보장임용 심사 시기

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다.

라. 부교수의 정년보장임용

- 1) 부교수는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대학에서 정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고,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가) 세계수준 대학의 해당분야 학술연구업적의 평균 이상인 경우

- 나) 세계수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
- 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단체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 라) 위 각호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업적으로 간호대학인사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2)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시 추가 연구실적 요건으로 조교수 재직기간 중 발표한 단독 논문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SCI 또는 SSCI급 간호·보건의료 관련 학술지에 5편이상이 게재 되어야 하며, IF가 상위 20% 이내 이어야 된다.

5. 겸임교원

가. 겸임교원의 자격

간호대학 겸임교원 추천에는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임용에 필요한 기본 요건들 외에도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간호대학 학생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
 - 가) 임상실습을 위해 학생이 파견되어 있는 병원의 실습담당 간호사
 - 나) 임상실습을 위해 학생이 파견되어 있는 기관의 실습담당자

나. 승진 및 해임

- 1) 겸임교원의 승진은 전공영역교수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겸임교원의 직급은 상응하는 연도의 간호대학 교원 직급보다 상회할 수 없다.
- 2) 겸임교원은 전공영역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교육에 관여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정지되었을 경우, 그 직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공영역 교수의 요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해임될 수 있다.

6. 명예교수 및 초빙교원, 시간강사, 조교의 임용에 관해서는 본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4.15)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교원승진에 따른 연구실적물 인정기준(편수)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진, 재임용의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가. 승진, 재임용의 잔여기간 산정은 2008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구실적물 적용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text{구기준} * \text{경과년수} / \text{소요년수}) + (\text{신기준} * \text{잔여년수} / \text{소요년수})$$

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소요년수: 상위직급 승진을 위한 본교 재직 실제 년수
- 경과년수: 이전 승진 발령일(혹은 본교 임용일)부터 2008년 4월 15일까지의 기간을 년수로 환산한 값
- 잔여년수: 2008년 4월 15일부터 상위직급 승진 임용신청 가능일까지의 기간을 년수로 환산한 값

라. 연구실적물 산출 결과가 정수가 아닌 경우는 상위편수로 한다.

이 세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7)
이 세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8)
이 세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3)
이 세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6)
이 세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3.)